

공 시 송 달 공 고

건축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9조 및 동법 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(행위자)에게 「위반건축물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」 명령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, 우편물이 반송(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주소불명, 기타)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
2. 공고대상자(송달내용)

건 축 주		위 반 건 축 물 현 황					
성 명	주 소	대지위치	구분	구조	용도	면적	위법내용
김○중	화성시 10용사로 28○, ○동,○호(능동,○)	평택시 서정동 905-○,○층	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	① 4층 조립식패널 주택 40.42㎡			건축법 제14조
파○완병공 파중중	평택시 중앙로 119-○(비전동)	평택시 이충동 495-○,-○	원상복구 2차 시정명령	① 1층 조립식패널 근린생활시설 82.82㎡ ② 2층 조립식패널 근린생활시설 79.07㎡			건축법 제11조

3. 처분근거 : 「건축법」 위반에 따른 제79조, 제80조
4. 공고기간 : 2019. 10. 21. ~ 2019. 11. 04.(14일간)
5. 공고장소 : 관할 행정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
6. 문 의 처 : 송탄출장소 건축복지과(☎031-8024-6541). 끝.

2019. 10. 21.

평택시 송탄출장소장

